

##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

세계 모든 국가들이 목재포장재 검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검역을 시작한 나라들도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의 검역정보를 확실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국가들의 소독처리방법과 증명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표로 마련하였으니 참고 하십시오.

(출처 : 국립식물검역소 <http://www.npqis.go.kr>) - 편집자 주 -

(주의) 표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반드시 수출 국가의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수출하시기 바랍니다

### 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들의 소독방법 및 증명방법

(2008. 1. 9. 현재)

대 록	국 가	시행일	〈소독방법〉 1가지 선택		〈증명 방법〉 1가지 선택			기 타
			열처리	MB훈증	소독처리마크	식품위생증명서	소독증명서	
아시아	중 국	2002.1.1	○	○	○			
"	인 도	2004.11.1	○	○	○	○		
"	일 본	2007.4.1	○	○	○	○		
"	필리핀	2005.1.1	○	○	○			
"	요르단	2005.11.17	○	○	○			
"	시리아	2006.4.1	○	○	○			
"	인도네시아	미실시	○	○	○			
"	레바논	2006.3.9	○	○	○			
"	한 국	2005.6.1	○	○	○			
"	오 만	2006.12.	○	○	○			
오세아니아	호 주	2004.9.1	○	○	○	○	○	수피제거
"	뉴질랜드	2003.4.16	○	○	○	○	○	수피제거



## | 식 물 검 역 |

대 륙	국 가	시행일	〈소독방법〉 1가지 선택		〈증명방법〉 1가지 선택			기 타
			열처리	MB훈증	소독처리마크	식품위생증명서	소독증명서	
유 럽	유럽연합※	2005.3.1	○	○	○			수피제거('09.1.1부터)
"	러시아	2000.1.1				○		
"	우크라이나	2006.1.24	○	○	○			
"	크로아티아	2007.1.1	○	○	○			수피제거
"	노르웨이	2008.1.1	○	○	○	○		
"	스위스	2005.4.1	○	○	○			수피제거
"	터 키	2005.1.1	○	○	○			수피제거
북중미	미 국	2005.9.16	○	○	○			수피없음
"	캐나다	2005.9.16	○	○	○			수피없음,충공없음
"	멕시코	2005.9.16	○	○	○			수피제거,충공없음
"	코스타리카	2006.3.19	○	○	○			
"	과테말라	2005.9.16	○	○	○			
"	니카라과아	미공지	○	○	○			
"	도미니카	2006.7.1	○	○	○			
"	파나마	2005.2.17	○	○	○			
"	혼두라스	미공지	○	○	○			
남 미	브라질	2005.6.1	○	○	○			수피제거,충공없음
"	콜롬비아	2004.6.3	○	○	○			
"	칠 레	2005.6.1	○	○	○			수피제거
"	엘살바도르	2004.5.1	○	○	○			
"	아르헨티나	2005.6.1	○	○	○			
"	페 루	2005.9.1	○	○	○			
"	베네주엘라	2005.5.2	○	○	○			
"	볼리비아	2005.9.2	○	○	○			
"	파라과아이	2005.6.28	○	○	○			
"	에콰도르	2005.9.30	○	○	○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2005.1.1	○	○	○			
"	나이지리아	2004.9.30	○	○	○	○		
"	이집트	2005.10.1	○	○	○			
"	케냐	2006.1.	○	○	○			
"	세이셸	2006.3.1	○	○	○			
계	68개국							

※EU연합 27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특이사항

○ 국제기준(ISPM No. 15)

(1) 또는 (2)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처리한 후 소독처리마크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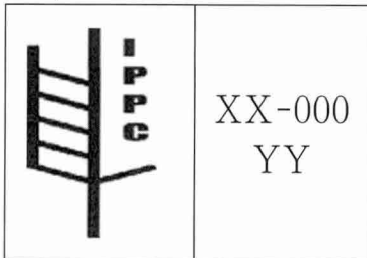
(1) 열처리 : 목재 중심부가 56℃이상 최소 30분간 유지

(2) MB 훈증 :

온 도	투약량 (g/m <sup>3</sup> )	경과시간별 최저농도(g/m <sup>3</sup> )			
		2시간후	4시간후	12시간후	24시간후
21℃ 이상	48	36	31	28	24
16℃ 이상	56	42	36	32	28
10℃ 이상	64	48	42	36	32

「최저농도는 10℃ 미만이 되어서는 안되고, 최저 훈증시간 24시간이어야 한다. 농도측정은 최저 2, 4, 24 시간 후에 실시되어야 한다.」 (2006년 4월 개정)

- 소독처리마크



- symbol(로고)
- XX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 000 : 목재포장재 생산자에 대해  
국가식물보호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
- YY : 승인된 조치에 대한 IPPC  
약어(예: HT, MB)

주의) 수출 전 반드시 국가별 세부 요건 사항을 국립식물검역소 홈페이지 (www.npqs.go.kr) 목재포장재 검역정보⇒목재포장재 검역시행국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